-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 (안 제14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안 별표3)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창수)

-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처리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다 원활히 처리하고 금년 7월부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코자 현실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 매하는 것을 하지 않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토록 한 것은 객석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되며,
- 11조의2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에서 3항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 선정방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11조의3 수수료징수업무의 위탁방법에 대한 심도 있 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제출년월일 : 2004. 6.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리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등에게 음식물쓰레 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 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주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수거시간 등을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제7조제4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하도록 함(제 11조제2항)
-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신설(제1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거·운반·처리수수료 징수업무의 위탁조항 신설(제11조의3)
-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 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제14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우반 대행업체가 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부과 근거마련(별표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 (1) 입법예고(2004. 5. 20 ~ 6. 8)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2004. 6. 22(화) 11:00 보건교육실

(가) 심사결과 : 당초 개정조례(안) 제11조의4(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신설된 조항으로서 삭제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 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 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 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 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하며,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제1호에 의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시간은 매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 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 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 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 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

요한 용기의 규격 및 용량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규격 및 용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가구별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음식물 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거·운반·처리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의2(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1조제1 항에 의한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의3(수거·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수수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분리배출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거·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거·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타 시·군·구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되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 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 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 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칟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 레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1.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배추·무·감자 등의 채소류 ○갈치, 고등어 등의 생선류 ○돼지고지, 소고기 등의 육류 ○사과, 배, 수박, 오렌지 등의 과일류 및 껍질 ○미역 등의 해초류 ○기타 음식물의 조리 전·후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 꺼기	○비닐,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물기는 제거하여 부피를 최대한 줄인 후 배출 ○고춧가루 및 소금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김치, 젓갈,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은 물에 행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 ○지나치게 큰 덩어리의 음식물류 폐기물(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 ○상하거나 썩은 채소와 과일 등은 제거후 배출

- 2.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이물질
  -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및 호두, 밤,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등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통뼈 및 날카로운 뼈와 달걀 껍데기 등
    - 어패류 : 조개, 소라, 굴 등의 패류 껍데기 및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등
    - 채소류 : 먹고 남은 옥수수 대와 껍질, 마늘 대, 고추 대 등
  - 이물질 : 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 가축에게 해를 주거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는 물질

#### [별표2]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수 수 료	비고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세대당 월 1,500원	
2. 위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세대별 월 1,500원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와 5인 이상 인 세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	세대별 월 1,000원	
②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 이상인 세대	세대별 월 1,800원	
3. 음식업소	kg <b>당 114원</b>	

#### [별표3]

#### 과태료 부과 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প ক য়	T 4 8 9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 니한 경우	5	10	20	

적 용 법  다.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5 20 10	2차위반 10 50 20	3차위반이 전 20 100 30
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변경신고)서,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0	50	100
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 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 폐기물 관리법 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10	20	30
기국 또는 아시 아니만 경구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 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 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을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로 등에 오수	100	300	500
를 유출한 경우 나.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가 수거시간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 별지 제1호 서식 >

음성	식물류 폐기	무 간량의	무이 했 계 회	, [	] 신고서		처리기한		
н -	1211 11/1	- H 0 -1		L	] 변경신	고서	즉 시		
신	상호(명 칭)			사업기	자등록번호				
고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인	주소(사업장) (전화: )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sup>.</sup>	급식인원 :		명				
사업장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m²								
구 모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²								
" –	□ 농수산물도미	H시장 : 사업 <sup>2</sup>	장면적 :		m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1	음식물류 폐	∥기물의 배	출 및 처	리계획				
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 <b>/월</b>				
		감 량 :	처 리			부산물 처리			
자가감량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처리계획	, , , ,		일 자				+ ' ' '		
-) -) -) 첫 0	게 하나	kg/일 L라	7	kg/일 11 하요바버	kg/ <b>s</b>	_	九人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71 5	A) EL	kg/월 재활용							
위탁재활용	위 탁 개발·8 개활·8·량 방 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	·소·전화		
계 획	kg/월								
1111		·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I					
,) o F	u 125 = 7 0 2	 1	) () () () () () ()	0 7 7) 0 6) 2			- I - I - I		
	별시영등포구음식					제1호의 규	성에 의거		
음식물류 폐	기물 감량의무이	행계획 (신고	.서, 변경신고시						
			신고인	_	월 일 (서대	명또는날인)			
영두곡	E구청장 귀	하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u> </u>	대표자	7	13/114		_	 (전화 : )		
청 모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사업장주소 위탁업소명		(전화 : ) 		
–			결시선고달	세월중장조	1447.2	취역함조	<b>十</b> 至(包昇)		
자가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 <b>/월</b>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감량의무이	행계획 (변경)신고	고들 하였음을		ما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kg) 사업장명:

		자가감량			재 활 용			
년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 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자가 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 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 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 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상호(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출 고	성명(대표자)									
자 인	주소(소재지)									
□ 집 단 급 식 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사 업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장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m²			
규 모	□ 농수산물도	매시장 : 사업장	면적 :				m²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	부 산 물 처 리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업체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